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3. 10.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호

제출연월일: 2023. 3. 10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,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,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협력체계 구성,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예방 지원사업,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(안 제5조 ~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)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1) 기획예산담당관: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

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2-2049호

가) 예고기간: 2022. 12. 30. ~ 2023. 1. 1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특이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 비첨부 사유서: 첨부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협력체계 구성 등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지방고용노동(지)청, 산업안전보건공단,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, 사업주단체,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

1.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·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
3.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·업종별 대책
4. 사업주 및 근로자,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

및 홍보

5.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

6.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· 사업에 필요한 예산

7.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
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)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

2.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·연구

3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

4.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

5.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

6.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

7.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

8.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)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(이하 “안전보건지킴이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, 산업안전기사 등

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2.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·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

3.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

③ 안전보검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

2.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

3.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

4.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
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윤 경 병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6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